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88 호 2021. 4. 2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3호[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5호[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6호[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1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7호[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6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80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81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3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52호[공시송달 공고] 3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75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77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7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8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81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100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부경찰서”를 “북부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 11. 10.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로 우리 구 치안 관련 소관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 규정 삭제(제4조제3항)
- 나. 위원 위·해촉권자 개정(제4조제3항, 제6조 본문)
- 다. 협의회 사무처리 소관 경찰서 개정(제9조제2항)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2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
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제3조)
- 다. 적용대상 기관(제4조)
- 라. 구매촉진(제5조)
- 마. 업체정보 제공(제6조)
-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제7조)
- 사. 포상(제8조)

울산광역시 복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3호

울산광역시 복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입문과정	1명/월	10,000원 ~ 30,000원	·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음
전문과정	1명/월	20,000원 ~ 50,000원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중·장년층(45세~64세 이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제1조, 제2조)
- 나.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3조)
- 다. 퇴직자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대상(제4조, 제5조)
- 라. 퇴직자지원센터 수강료 관련 규정(제6조~제8조)
- 마.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제10조~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세율”로 한다.

제9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의무)”를“(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제8조, 제9조)
 -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오토캠핑사이트란 다음에 해상캠핑사이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 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가·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5×8m 위 5×4m)	4명	1개소/ 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 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5×8m 위 5×4m)	4명	1개소/ 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캠핑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당사현대차오션캠프(해상캠핑사이트) 사용료 신설(별표 1)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6호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와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 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복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제3조)

- 위생업소, 위생관련단체,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다. 지원 사업(제4조)

- 위생 관련 대회,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 위생업소 영업장 등 환경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제7조)

-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 정산, 그 밖에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187호

울산광역시 복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복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국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고자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와 참여(제3조, 제4조)
-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제5조)
- 라. 구청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제6조)
-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제10조)
- 바. 안전문화 진흥 지원 및 포상 근거(제9조, 제17조)
- 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제15조)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환경위생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천동 745-118번지

나. 면적 : 0.1156㎡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2021. 4. 23. ~ 2025. 12. 31.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시 북**장(공원녹지과)

나. 주소 : 울산**시 *구 산*로 1*1*(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임시주차장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20-20번지

나. 면적 : 5,200m²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2021. 4. 23. ~ 2021. 5. 30.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명촌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29. ~ 2021. 5. 13.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동천 일원	미상	미상	불법경작	-	41개소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5. 7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5조제1항)

- 수입증지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나.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등 추가(안 제7조제10호부터 제12호)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으로 수수료 규정 신설·삭제·변경(안 별표 1)

라. 「위생용품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별도 명시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1)

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전자정부법」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마. 「위생용품관리법」 제3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
- 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징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징수담당관
 - 전화 : (052)241-7526, 팩스 : (052)241-7519
 - 전자메일(E-mail) : sungyup73@korea.kr

6. 기타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징수방법)”을“(수수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공업·상업		"	500원	
(4) 농가·비농가		"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	300원	
(3) 수출실적		"	300원	
(4) 납품실적		"	300원	
(5) 건물사용		"	300원	
(6) 공장원료수요		"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폐업)사실증명		"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사실증명		"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 가 소요량		"	3,000원	
• 확정 소요량		"	1,000원	
(15)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등본·초본		1매	300원	
• 초 과		1매당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1건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1매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물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2) 어업·양식업 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5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	2,000원	
(8) 어장·어구·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10) 어업·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양식업권 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	4,000원	
(13) 어업권·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2,500원	
(14) 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삭제>			
(16) 시험 양식업·어업 허가 신청	"	2,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	9,000원	
나. 공동어업	"	7,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500원	
(26)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27) 어업·양식업 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원	
(28) 어업신고	"	1,500원	
(29) 어업·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	3,000원	
(34)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삭제>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양식업 허가 신청	"	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양식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4,500원	
(51)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	1,000원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	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점용료의 1천분의 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 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삭제>	"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신고)	"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20,000	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	"		100,000	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40,000	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	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	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	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		5,000	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		20,000	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	원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5,000	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		30,000	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0,000	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10,000	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	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60,000	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50,000	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		30,000	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30,000	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0	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5,000	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	건	20,000	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	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	원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	필지	800	원		
			연도별	100	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	건	800	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		10,000	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20,000	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30,000	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800	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800	원		
7. 재산관리·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	매	10,000	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	주택	800	원		
			연도별	100	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	주택	800	원		
			연도별	100	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칼라 발급 시	1	필지	1,000	원		
			1필지	1,500	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	건	6,000	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	1	건	1,500	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	건	1,500	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	건	1,500	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	건	1,500	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	건	30,000	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1	건	20,000	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1	건	10,000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	건	10,000	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	건	5,000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u>② 증지요금계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u></p> <p><u>③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9. (생략)</p>	<p><u>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u>② <삭 제></u></p> <p><u>③ <삭 제></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 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72 309 325 349"><신설></p> <p data-bbox="172 607 325 647"><신설></p> <p data-bbox="172 882 325 922"><신설></p> <p data-bbox="212 1541 416 1581">② (생략)</p>	<p data-bbox="794 309 1422 577">10.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u>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794 607 1422 853">11. 「<u>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794 882 1422 1514">1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u>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834 1541 1134 1581">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관계				2. 농수산관계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2) 어업·양식업 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3)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연안어업허가 신청	1건	3,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1건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	1건	2,000원		(8) 어장·어구·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원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10) 어업·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11) 어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	1건	1,000원		(11) 어업·양식업권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	1건	1,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3,000원		(12)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13)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1건	3,000원		(13) 어업권·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14)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14) 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15)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삭 제>			
(16) 시험어업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시험 양식업 어업허가 신청	1건	2,000원	
(17) ~ (21) (생략)				(17) ~ (21) (현행과 같음)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나. 공동어업	1건	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4,0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500원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27)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000원	
(28) 어업신고	1건	2,000원	
(29)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30) ~ (31) (생략)			
(32)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3) (생략)			
(34)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1건	1,000원	
(35) 해상중요생산업허가 신청	1건	3,000원	
(36) (생략)			
(3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원	
(38) ~ (45) (생략)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원	
(4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48)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49) ~ (50) (생략)			
(5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상명·대표·선박명칭)	1건	1,000원	
(53) ~ (54) (생략)			
<u><신 설></u>			
3. (생략)			
4.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	1건		
가. 위생처리업	“	3,500원/ 2,3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27) 어업·양식업 허가사항 (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	1건	1,500원	
(29) 어업·양식업 허가증 (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30) ~ (31) (현행과 같음)			
(32) 어업·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33) (현행과 같음)			
(34)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1건	1,000원	
<u><삭 제></u>			
(36) (현행과 같음)			
(37)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38) ~ (45) (현행과 같음)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47)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48) 어업권·양식업 포기 신고	1건	1,000원	
(49) ~ (50) (현행과 같음)			
(51)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52)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상명·대표자·선박명칭)	“	1,000원	
(53) ~ (54) (현행과 같음)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3. (현행과 같음)			
4. 보건사회관계			
<u><삭 제></u>			
<u><삭 제></u>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나. 세척제 제조업	“	15,000원/ 8,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3,500원/ 2,300원	
라.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		
마. 이·미용사 면허	“	2300원/ 2000원	
바.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500원	
(2)~(7) (생략)			
5. 문화공보관계			
(1)~(16)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6. (생략)			
7. 재산관리·회계관계			
(1) (생략)			
(2) 국유재산 대부(신규)신청			
(3) 국유재산 대부(연장)신청			
(4)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5)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8. ~ 10. (생략)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 료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생략)			
12. 환경관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2)~(7) (현행과 같음)			
5. 문화공보관계			
(1)~(16) (현행과 같음)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6. (현행과 같음)			
7. 재산관리·회계관계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8. ~ 10. (현행과 같음)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 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현행과 같음)			
12. 환경관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생략)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건	5,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 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 11. 1.]

□ 「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16. 12. 2.>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 1의3. 삭제 <2018. 3. 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 2. 3.>
- 3의2. 삭제 <2015. 2. 3.>
-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 7. 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등록·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1) 식품원료: 100,000원
- 2)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삭제 <2016.2.4.>

5. 삭제 <2016.2.4.>

6. 표시·광고 심의 신청: 100,000원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8. 재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예시: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b style="color: red;">수수료 <b style="color: red;">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b style="color: red;">· 시 · 군 · 구 조례로 <b style="color: red;">정한 금액 <b style="color: red;">()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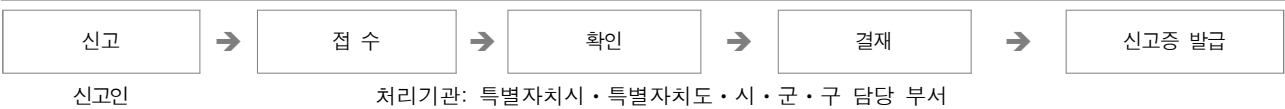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31598호, 2021.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1건당 5,000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1건당 5,000원

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1건당 5,000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1건당 20,000원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수수료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 6. 1. 시행)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안 별표 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3.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4. 개 정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aa4leaf@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 3) 팩 스 : 052-241-7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농수산물 다음에 민원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원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장수담당관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장수담당관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복지지원과	(생	략)	복지지원과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생	략)	사회복지과	(현행과	같음)
농수산과	1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농수산과	1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수산과	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제1항	
	3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수산과	3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제2항	
<u><신 설></u>					민원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민원지적과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 수요에 따른 업무 신설 및 부서명 변경 등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 및 지원 업무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행정지원국

- 부서명 변경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과(안 제5조제1항)

다. 복지환경국

- 부서명 변경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안 제6조제1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경제 진흥”을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생략)</p> <p>1. 2. (생략)</p> <p>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 행정,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p> <p>4. 5. (생략)</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 지원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 청소년과, <u>관광해양개발과</u>, 도서관과, 민원지적과를 둔다.</p> <p>② (생략)</p> <p>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 환경국에는 복지지원과, <u>사회복지과</u>,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u>청년정책 및 지원</u> -----</p> <p>4. 5. (현행과 같음)</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u>관광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u>노인장애인과</u>-----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 (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를 분과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증 1명(39명 → 40명)
- 6급 이하 : 감 1명(632명 → 63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직속기관 : 5급 증 1명(3명 → 4명)

3.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 무 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0</u>	24	3	<u>4</u>	1	8
6급 이하 계	<u>631</u>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 · 구조문(별표)대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기 속 관	사 업 소	동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기 속 관	사 업 소	동		
총 계	679	-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3급	1	1	-	-	-	-		
4급	5	4	-	1	-	-	4급	5	4	-	1	-	-		
5급	39	24	3	3	1	8	5급	40	24	3	4	1	8		
6급이하 계	632	-						6급이하 계	631	-					
별정직 계	1	-						별정직 계	1	-					
6급상이하계	1	-						6급상이하계	1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총 정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 (241-7102)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 복구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1기 울산 복구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4. 29.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4. 29.(목) ~ 5. 14.(금) (15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 울산 복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 울산 복구 소재 기업, 청년단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정치, 종교, 영업 등을 목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은 제외함.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1~3】
 - 필요한 증빙서류(활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지원서류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기획예산담당관(연암동, 울산북구청)
 - 팩 스 : 052-241-7109
 - 이메일 : kiwee81@korea.kr
- 선정기준 : 희망분야, 활동실적, 연령분포, 성비, 지역 등 종합적 고려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필요시 인터뷰 심사 병행
- 결과발표 : 2021. 5월중(개별 문자통보)

2. 주요 활동

-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지원내용 : 회의 참석수당 및 활동비 지급

4.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052-241-7151)

붙임 1 지원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지원자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e-mail
	주소		
소속	예) 00대학교 00학과 0년 재학중, 회사원은 회사명 부서 직책 등		
관심분야	①일자리 ②주거·교육 ③복지·문화 ④참여·권리 중 선택(중복 가능)		
활동경력	기관명	분야(과정)	기간
기타활동	활동분야	활동내용	기간
자유 서술 (별지 작성 가능)			
자기소개	* 지원동기/ 경력사항/ 활동의지/ 본인 관심분야 활동계획 등		
울산 북구 청년문제에 대한 생각	* 본인이 생각하는 울산 북구의 청년문제, 지역차원의 대안 등		
본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울산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경력사항 등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기재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접수일부터 조사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 다만 위촉되 는 경우 해촉 시까지 보유·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고지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울산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경력 등 지원서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조사목적 달성 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